

삼신화학공업(주)

윤리경영

2024.01.01.

1. 개요

가. 윤리헌장 제정목적

삼신화학공업(주)는 올바른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자유경쟁시장의 질서와 공정경쟁 원칙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과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글로벌 기업을 지향한다. 삼신화학공업(주)는 윤리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The Ten Principles of the UN Global Compact) 등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존중하고자 지지한다. 윤리경영의 실천은 이를 위한 근간이 되는바 삼신화학공업(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개정하였다. 삼신화학공업(주)의 모든 구성원은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나. 윤리헌장 적용범위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의 적용대상은 삼신화학공업(주) 임직원으로서 임원과 직원을 포함하며,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에 따라 행동한다.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이 적용되는 조직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당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이 적용되는 회사는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기반으로 하는 규정, 정책,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관련 규정, 정책, 지침 등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다. 윤리 리스크 관리체계

삼신화학공업(주)는 윤리경영을 준수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본 윤리헌장에 따라 윤리경영 실행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윤리 리스크를 평가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공유하기 위한 윤리실사 정책을 수립한다. 삼신화학공업(주) 윤리경영 전담부서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윤리 리스크 관리체계(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및 윤리실사)를 이행하며, 윤리경영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해당 관리체계를 개정한다.

2. 윤리헌장 및 실천규범

[윤 리 헌 장]

- (1)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에 공감하며 성실과 최선을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 (2)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이를 위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 (3) 우리는 자유경쟁원칙을 존중하므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 (4) 우리는 기업의 전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5) 우리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기여한다.

가. 윤리경영 및 반부패

- ①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 및 법령을 준수한다.
- ②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하지 않는다.
- ③ 의심스러운 거래가 신고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한다.
- ④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허위 및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⑤ 사업장 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수수료 또는 알선비용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 이해상충 방지

- ①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

- ②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제안·허가·제공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 ③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 상충의 회피가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다. 반경쟁행위 및 불공정 거래 방지

- ①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한다.
- ②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협력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결제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다.
- ④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지 않는다.
- ⑤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라. 위조부품 방지

- ①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하지 않으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하지 않는다.
- ②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한다.
- ③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 준수

- ① 수출제한 및 경제제재와 관련한 국가별 법령 및 국제적 규약을 준수한다.
- ② 수출제한, 경제제재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법인, 단체, 개인 등과 거래하지 않는다.

- ③ 수출제한, 경제제재와 관련한 법령 및 규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바. 지속가능경영

- ① 기업이 영위함에 있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발전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한다.
- ② 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고자 임직원에게 대한 권리 존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 및 보호한다.
- ③ 자연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생태계의 다양성과 안정을 유지·보호하며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환경 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한다.
- ④ 장기적인 비전과 가치를 설정하여 사회적 목표와 경제적 성과를 조화시키며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한다.

사. 정보보호

- ① 고객사 및 협력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 없이 보관 및 사용하지 않는다.
-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

아. 지적재산 보호

- ① 고객사 및 협력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자. 책임있는 구매

- ① 분쟁광물이란 분쟁지역(공고민주공화국 외 인접 9개국)에서 채굴되어 판매되는 광물(코발트,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등)을 지칭하며 분쟁광물에 대한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등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 ② 공급망 내 어떠한 단계에서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강제노동을 이용하여 제조한 원재료, 부품 및 구성품을 공급받지 않는다.

- ③ 분쟁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하고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인 환경영향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경영 시스템

가. 기업 성명서 공시

- ①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한다.
- ②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의행 의지를 경영진 신년사, 내부지침,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공유하고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외부에 공개한다.

나. 담당자 선임

- ① 지속가능성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선임하고, 지속가능경영 활동 계획 수립과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한다.

다. 리스크 점검

- 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등 전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한다.

라. 교육 및 소통

- ① 본 실천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본 실천규범 관련 법령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 및 전파한다.
- ② 본 실천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한다.

마. 정보 관리

- ①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②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별 법령, 산업단체, 사업계약을 체결한 중요 고객사 등에서 해당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바. 고충처리제도 운영

- ①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거나,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한다.
- ②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한다.

사. 구제수단 마련

- ① 사업활동으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규모와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 ②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구제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며, 구제방안을 결정할 때 피해 당사자 및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과 협의한다.

아. 관계사 및 협력사

- ①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협력사 등 공급망 참여 기업 전반에게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요소를 관리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장한다.
- ② 협력사 등 공급망 참여 기업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 협력사 등 해당 공급망 참여 기업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위해 노력한다.

자. 규범 준수

- ①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실천규범 준수 여부에 대해 고객사 또는 고객사가 지정한 제3자가 진행하는 서면점검 또는 현장방문 시 본 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이행 수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② 본 실천규범의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관리해야하며 해당 문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한다.
- ③ 본 실천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점검 혹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필요시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당사 규칙 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참고자료

국내·외 인권표준 및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는 정신과 가치를 추구하고, 아래의 선언 및 협약을 기반으로 제정하였다.

- ①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 ② UN Global Compact, The Ten Principles of the UN Global Compact
- ③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1998)
- ④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2019)
- ⑤ UN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2013)
- ⑥ UNFCCC, Paris Agreement (2015)
- ⑦ OECD,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 ⑧ Drive Sustainability, Global Automotive Sustainability Practical Guidance (2017)
- 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2011)
- ⑩ ISO,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2010)
- ⑪ UN SDG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 ⑫ CDP (<https://www.cdp.net/en>)